

## 교육윤리 지침

2013. 3. 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윤리규정」의 근본취지에 따라 학교-교원-학습자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복(恢復)하고 품격있는 학문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 학생지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윤리'란 교원의 강의·교수활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학생의 지도·관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덕목, 태도 및 관련 행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전임·비전임의 교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일반의무) ① 교원은 스승으로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학습권을 독려한다.

② 교원은 법적 의무를 넘어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으로써 성실하고 정직하게 강의를 진행한다.

③ 교원은 필요한 때에 수시로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학습윤리를 일깨워 줌으로써 학생이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5조 (강의계획) ① 교원은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학습목표, 수업방식, 수업일정, 평가방법 등을 기술한 강의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본교가 정한 기일 내에 제시한다.

② 교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제시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6조 (강의준비) ① 교원은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한다.

② 교원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최신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강의 진행 및 시간) ① 교원은 본교가 정하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취소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미리 통보한다.

② 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학습자의 수강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불가피하게 휴강을 했을 경우 학생들과 협의하여 보강을 진행한다.

④ 교원은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지각 및 단축수업을 자제한다.

⑤ 교원은 강의시간 전체를 수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하여 이끌어 간다.

⑥ 교원은 자신의 권위와 책임 아래 수업을 진행하며, 특히 대리강의를 하지 아니한다.

⑦ 교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면 교육과정이 다른 학생들 또는 다른 교과목과의 합반 수업

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수법) ① 교원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 및 교과내용의 성격에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학습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그들이 지적 깨달음에 따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수법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이 정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본교 학교규칙이 정하는 일반적인 교육방식 외에 사이버·온라인 강의를 하지 아니한다 (단, 정규 수업 외의 과제제출, 강의 참고자료 등은 온라인의 방법으로 제공 가능)
2. 강의시간에 과도한 비중의 학생발표수업을 진행하여 강의자질을 의심받지 않도록 한다.
3. 교과내용의 성격상 발표수업 및 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야 할 때는 학습자의 지적 완성을 위하여 발표 이후 구체적인 피드백을 진행한다.
4. 교과내용의 성격을 벗어나는 영화 및 비디오 상영은 하지 아니하고, 강의시간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상영하지 아니한다.
5. 교과내용의 성격을 벗어나는 교외활동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강의태도) ① 교원은 강의 중 학습자들의 다양한 견해 및 시각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③ 교원은 종교적 또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험·실습·실기) ①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 교원은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한다.

② 교원은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조교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출석관리) 교원은 학습자의 성실성에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출석을 강조하여 출석 부정행위(예: 대리출석)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제12조 (과제) ① 교원은 강의에서 다루어지고, 다루어져야 할 의미 있는 과제를 고안한다.

② 교원은 학습자의 과제작성에 대한 방법 및 지침 등을 구성하여 명확히 제시한다.

③ 교원은 학습자가 과제작성 시 지켜야 할 학습윤리를 강조한다.

④ 제3항이 정하는 학습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물의 표절, 변조 또는 위조
2. 과제물의 구매·양도·재사용
3. 그 밖에 학문의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제13조 (시험) ① 교원은 학습자의 지적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시험이 되도록 교원의 능력을 표현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문항을 개발한다.

② 교원은 시험 감독을 엄격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학습자들로 인해 정직한 학습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 (평가) ① 교원은 학습자의 성적평가와 관련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평가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교원은 학습자들의 평가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제15조(학생지도) ① 교원은 학습자가 기본교양 및 품성과 전문능력 및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해 학습자의 면담에 정기적으로 응한다.

제16조 (조교) ① 조교는 교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② 조교는 교원윤리에 관한 학교규칙을 숙지한다.

③ 조교는 실험·실습·실기 수업 조력 시 학습자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성실함과 책임감 있게 임한다.

제17조 (대외관계) ① 교원은 본교 강의를 매개로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은 다른 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연을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회성 강의 또는 강연: 학과(부)장의 허가

2. 정기적·계속적 강의 또는 강연: 대학(원)장의 허가

③ 교원이 정당한 사유(예: 외부 출제위원 등)로 인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본교의 교과목에 대하여 보강으로 보충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학과(부)장은 대체강의자를 지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강의를 하지 못한 교원이 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본교로 입금 처리한 후 정산한다.

부 칙 (2013. 3.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습윤리 지침

2013. 3. 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학생의 학습에 관한 기본소양과 의무를 정함으로써 교육의 품격과 효율성을 높이고 품격있는 학문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란 학습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원'이란 본교에서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본교의 전임·비전임의 교원을 말한다.
3. '학습윤리'란 학습자가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과정(강의수강,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교원과의 관계 등)에서 지켜야 할 덕목, 태도 및 관련 행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일반의무) ① 학습자는 대학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과 열정적인 태도로 모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학습자는 고등교육을 받는 교양인으로서 위치를 자각하며 도덕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학문탐구에 정진한다.
- ③ 학습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 또는 동료학생과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학습자는 교원과 동료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제5조 (학습준비) ① 학습자는 교원의 강의계획서 등을 충분히 탐색하여 자신의 학문적 지식 탐구 및 미래 비전과 연결된 교과목을 면밀히 선택하여 수강한다.

- ② 학습자는 매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수강하는 교과목의 수업자료를 미리 탐독하고 확인하는 등 성실한 태도로 수업준비를 한다.

제6조 (출석, 수업방해행위 등) ① 학습자는 정해진 수업에 결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 학습자는 지각을 하거나 수업 진행 중에 나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동료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습자는 출석과 관련하여 위계행위(예: 이른바 대리출석)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학습태도) ① 학습자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원의 수업이 제공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 ②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수업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에 응하여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이해력과 통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과제) ① 학습자는 과제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학습자는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인용한 모든 자료(책·논문·인터넷 자료 등)는 변조·왜곡 없이 정확히 표시한다.

③ 학습자는 협동학습의 경우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 다른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팀 전체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시험) ① 학습자는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험을 준비한다.

②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역량 및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하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위한 보조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제10조 (강의평가) 학습자는 한 학기 수강한 교과목의 강의 품질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를 정직하게 수행하며, 잘된 점과 개선 의견 등을 정성스럽게 표현한다.

부 칙 (2013. 3.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